

2025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구 미 시

2025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관련근거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

2.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승인액	지출액	비고
합계					41,077,000	41,077,000	
체육진흥과	명품체육 도시조성	체육진흥및 육성	어르신스포츠 시설이용료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77,000	41,077,000	

3. 예비비 지출 사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정부 2회 추경 이후 긴급히 진행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우리시 시비 부담분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4. 사업별 집행 내용

가. 사업개요

- 목 적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초고령 사회 대응
 - 추진근거
 - 추석 민생안정대책('25.9.15., 관계부처 합동)
- 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 지역소비 붐업 - 스포츠클럽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1호
 - 「스포츠기본법」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5~69세 대상)'과 중복 수혜 불가
 - ※ 구미시 배정인원(횡수기준) 3,912명 / '25년 4월말 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수 비율 반영
 - 신청기간 : (1차)'25. 8. 4.(월)~ 8. 13.(수), (2차)'25. 9. 5.(금)~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서면 접수
 - 지원금액 : (1차)5만원, (2차)10만원 ※ 1인당 최대 15만원
 - ※ 1차 신청 지급분은 10.31.까지, 2차 신청-접수에 따른 지급분은 12.31.까지 사용
 - 사 용 처 :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
 - 지원절차

절차	① 신청·접수	② 대상자 선정	③ 상품권 지급	④ 대금 정산
주체	65세 이상 어르신	공단	결제운영사 → 선정자	결제운영사 → 지자체
방식	온라인 신청 (연금수급증명서 첨부, 제출)	지자체별 예산 고려하여 선정 후 S MS 발송 통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급 (5만원권 등, 모바일)	집행잔액 지자체 반납

나. 집행내역

(9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3)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41,077	41,077	41,077	0	
어르신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41,077	41,077	41,077	0	

관계법령

□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10. 생략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12. 생략

②~④ 생략

□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조 민 규
	팀 장	김 원 대
	담 당 자	석 병 훈 (480-2532)